

의안번호	제 319 호
의결년월일	1995. 12. 28. (제 40 회)

의결사항	인민가정
------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1995. 12. 18.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95. 1. 5 개정, 제4901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0조3호.5호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사업의 지원사업 종류를 추가함

2. 주요골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추가·보완함(안 제2조)

3. 참고자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통상산업부 수발57350 - 993('95. 11. 10)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p>